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3484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4.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번호 3484

Ⅰ. 조례안(개정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석주 의원(찬성 24명)

나. 발의일자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효행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경로 중심 표현을 효 중심으로 정비하고 ‘효의 달’ 행사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는’을 ‘뜻은’으로 변경함(안 제2조)

○ ‘부모 등’이란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경로의 달’을 ‘효의 달’로 변경함(안 제6조)

○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으로 ‘효행수당’을 신설함(안 제7조)

○ 효의 달 행사 지원을 신설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현행 조례 ① 제2조에 '정의는'을 '뜻은'으로 변경하고, 정의 규정에 '부모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② 제6조 제1항에서 기존 '경로의 달'이란 용어를 '효의 달'로 정비하며, ③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효행수당'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④ '효의 달' 행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는 상위법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효행장려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조항에 맞춰 '부모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경로의 달'을 '효의 달'로 변경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뜻은 ----------. 1.·2. (현행과 같음)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6조(장수노인 지원) ---------- 효의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

	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효행수당"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8조 (생 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2 검토 의견

가. '정의는'을 '뜻은'으로 변경(안 제2조)

○ 본 개정안은 제2조(정의) 조문의 표현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에 따르면, 정의 규정의 경우, 둘 이상의 용어를 열거하여 규정하는 경우 '정의'라는 용어보다는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제2조의 문구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치법규 입안 방식과의 표현 체계 정합성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부모 등'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개정안 제2조제3호는 '부모 등'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효행장려법」과 같이 '부모 등'을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으로 정의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 <신 설>	제2조의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 이는 상위법인 「효행장려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용어의 표현상에 문제가 없으며, '부모 등'은 민법 제777조[1]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2]을 말하며, 민법 제772조에 따라 입양자[3]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존속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함.

---

1)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2) 존속(尊屬)의 사전적 의미는『법률』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으로 본인보다 윗세대에 해당하는 직계 친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친외조부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임.

3)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효행장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다만, 본 개정안의 제2조제3호를 포함하여 기존의 제2조제1호·제2호가 모두 상위 법령에 있는 용어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법령의 용어 정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장려법」 제2조에 따른다'고 표현하는 방식도 있다[4]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 '경로의 달'을 '효의 달'로 변경(제6조)

○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경로의 달'이란 표현을 '효의 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수노인 지원)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이는 상위법인 「효행장려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의 달'과 동일하게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4) 자료: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022).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 9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효행장려법)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참고로, 노인복지법 제6조[5]에서는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고 있고, 사회 통념상 '경로의 달'이란 명칭이 많이 사용함.

라. 100세 이상인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으로 '효행수당'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

○ 개정안은 「효행장려법」 제11조를 근거로 100세 이상인 부모 등을 부양하는 '세대'에게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효행수당"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5)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 재정분석과에서는 효행수당 비용추계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밝히고 있음.

○ 현재 국가데이터 인구총조사에서도 가구 수는 85세 이상이 마지막 연령구간으로 100세 이상 세대를 구분한 인구추계 자료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26년 1월 주민등록 기준 100세 이상, 2인 가구 이상 어르신 949명 전체가 효행수당 대상일 경우 연 100천원 지급 시 최대 94,900천원, 연 200천원 지급 시 최대 189,8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 중 부부 거주 세대와 시설 거주자, 비동거 세대 등을 제외한다면 필요 예산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효행수당 대상 어르신 인구수>

(2026년 1월 주민등록 기준)

구분	서울시 어르신 인구 현황		추정소요예산	
	연령	인구수	10만원지급	20만원지급
전체가구	90세 이상	56,813명		
	100세 이상	1,433명		
2인가구 이상	90세 이상	36,928명		
	100세 이상	949명	94,900천원	189,800천원

- 실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23개의 자치구에서 효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성북구와 동작구는 어르신 관련 조례에 효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함.

- 현재 7개 자치구(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에서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0개 자치구에서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선물[6]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기원 지팡이(청려장)을 증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에게 매년 10월에 장수시민패 등을 지원함

<자치구별 효행수당 지원 및 효관련 조례 현황>

자치구	명칭	대상	주기	금액 (만원)	관련조례명	조례대상 연령
종로구					종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도가정:75세이상 3세대이상
중 구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용산구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성동구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광진구					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효도수당:80세이상 3세대이상
동대문구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중랑구					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성북구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 연령기준 없음
강북구	효도지원금	100세이상 부양 자녀	연	20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 100세이상
도봉구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노원구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은평구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행장려금 : 100세이상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100세이상 부양 자녀	연	20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행장려금: 100세이상

6)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선물 지원 현황: 참조2 (p.15)

자치구	명칭	대상	주기	금액 (만원)	관련조례명	조례대상 연령
마포구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행표창: 100세이상
양천구	효도수당	100세이상 부양 자녀	연	20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도수당: 100세이상
강서구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구로구	효도수당	100세이상 부양 자녀	연	20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행수당: 100세이상
금천구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영등포구	효도수당	100세이상 부양 자녀	연	20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효행장려금: 100세이상
동작구	효도수당	80세이상 3세대이상	연	20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관악구					관악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서초구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연령기준 없음
강남구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조례	- 연령기준 없음
송파구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 효행장려금: 90세이상
강동구	효행장려금	100세이상 부양 자녀	연	20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조례	- 효행장려금: 100세이상

○ 수익적 행위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당 지원을 재정자립도나 기초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적법할 것임. 다만 기초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개정안 제7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자치구별 중복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행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추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6개 광역지자체에 효행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어르신 관련 조례에 효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광역지자체별 효관련 조례 현황>

	조례명
1	서울특별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포함
4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강원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전라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전북특별자치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15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 효행수당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없음('26년 2월 현재)

마. 효의 달 행사 지원 신설 (안 제8조)

○ 개정안은 '효의 달' 관련 행사 개최 지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효행장려법」제13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효행장려법)

제2장 효행장려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3장 효행 지원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에서는 매년 어르신 건강대축제,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효친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어르신 관련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397,000천원을 편성하였음.

- 이외에 노인복지시설 사업비에도 10월 어르신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 행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근거와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할 것임.

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신설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효행수당 지원을 위해 대상가구 전수조사, 적정한 지원 금액, 자치구별 예산 지원 비율 등의 고려를 통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사업 홍보 등 추진이 필요함. 따라서 1년의 유예 기한을 두고 시행일을 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부서 의견: 원안가결

○ 상위법인「효행장려법」상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존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 의식 고취라는 개정 목적에 공감함.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효행수당의 지원 근거와 '효의 달' 행사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서울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10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행수당 신설은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담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의미가 있음.

○ 또한 효행수당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효행에 대한 상징적 장려를 넘어 실질적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미 6개 자치구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과 1개 자치구에서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행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구 간 지원 격차 및 정책 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례에 효의 달 행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진영	02-2180-8140

참조 1	자치구별 100세 이상 어르신 현황

(2026.1월 기준, 단위:명)

자치구	총 인구수	100세 이상	남	여
합계	9,299,701	1,433	293	1,140
종로구	136,798	34	9	25
중구	117,718	21	5	16
용산구	201,746	52	18	34
성동구	274,695	30	5	25
광진구	330,933	45	13	32
동대문구	348,620	51	13	38
중랑구	376,920	60	9	51
성북구	422,146	66	13	53
강북구	278,750	41	5	36
도봉구	299,545	72	14	58
노원구	482,461	86	17	69
은평구	454,860	73	19	54
서대문구	299,942	55	10	45
마포구	357,232	47	7	40
양천구	424,606	65	10	55
강서구	549,536	100	15	85
구로구	383,226	44	7	37
금천구	223,012	24	7	17
영등포구	371,228	56	13	43
동작구	371,748	56	12	44
관악구	477,657	43	6	37
서초구	415,407	67	18	49
강남구	555,787	87	19	68
송파구	645,821	88	18	70
강동구	499,307	70	11	59

참조 2	자치구별 장수축하금(선물) 지원 현황

자치구	명칭	대상	주기	금액 (단위:만원)
종로구	장수축하금	100세	연	50
중구	장수수당	90세	5세단위	20~50
용산구	장수축하금	100세	1회	100
성동구	장수수당	100세	1회	30,선물
광진구	장수축하금	90세이상 수급자	연	30
동대문구	2017년 중지			
중랑구				
성북구	장수선물	100세	1회	50상당
강북구	장수선물	100세	1회	50상당
도봉구	장수선물	100세	1회	50상당
노원구	장수축하금	90, 100세	2회	100
은평구				
서대문구	장수축하금	100세	1회	100
마포구	장수축하금	100세	1회	100
양천구				
강서구	장수선물	100세	1회	30상당
구로구	장수축하금	100세	1회	100
금천구	장수수당	95,100세	2회	10, 100
영등포구	장수수당	95,100세	2회	5, 10
동작구	장수선물	100세	1회	50상당
관악구	장수선물	100세	1회	50상당
서초구	장수축하금	100세	1회	100
강남구	장수선물	100세	1회	50상당
송파구				
강동구	장수선물	100세	1회	30상당